
	<h1>보 도 자 료</h1>		
	<b>배포일시</b>	2021. 1. 7.(목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<b>담당 부서</b> 주택건설공급과	<b>담당 자</b>	• 과장 김경현, 사무관 민경철, 주무관 한현규 • ☎ (044) 201-4897, 3378	
<b>보 도 일 시</b>	2021년 1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」 개정

### - 위원의 제척·회피제도 내실화,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·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의사운영규칙”)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(‘21.1.8. ~ ‘21.1.28.)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(위원장 길기관, 이하 “위원회”) 위원의 제척·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, 위원회 절차의 신속·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 실효성 제고

- 현행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·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.
-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·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,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,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.

## ②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·경제성 제고

- 종래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,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·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하였다.
-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·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,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·복사 절차를 마련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현 과장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·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의 ‘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’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※ 의견 제출기간 : '21. 1. 8. ~ '21. 1.28.(20일간)

의견 제출처 : ☎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☎ 044-201-4897, 3378, fax 044-201-5684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(044-201-4897),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염성준 과장(031-910-42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**법무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에서 하자판정 의뢰 시 의사운영규칙 준용**
  - \* 「집합건물법」에서는 하자판정 요청 주체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의사운영규칙에서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
- ② **문서 통지방법 구체화**
  - \*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등기우편, 그 외 문서는 우편, 전자우편 등
- ③ **진행중인 전유부분 사건 종결 전에도 추가 신청 허용**
  - \* 전유부분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기 전까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한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곤란
- ④ **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**
- ⑤ **흡결보정명령을 2회로 한정하고,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**
  - \* 반복적인 흡결보정명령으로 절차진행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
- ⑥ **신청서 상의 피신청인이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표시정정 허용 및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내용 변경 허용**
  - \* 피신청인 표시정정은 신청인의 신청으로만 가능하고,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하 후 재신청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, 신속한 처리 곤란
- ⑦ **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추가**
  - \* 당사자간 상당한 의견차이로 객관적으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사례 발생
- ⑧ **제척·회피대상 확인 및 기피신청권 행사기회 부여**
  - \* 위원회는 참여위원의 제척·회피 사유 해당 여부 확인,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 확인서 제출,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행사 기회 부여
- ⑨ **당사자 요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회의 속행·연기 근거 마련**
- ⑩ **당사자의 사건기록 열람·복사 절차 마련** \* (현행) 정보공개청구
- ⑪ **별지 서식 정비(9개)** \* 용어·자구 수정, 설명문구 신설 등